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6. 1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6월 1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년 6월 16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0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4년 6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는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제3조의2 신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제16조의2)
-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 ~ 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 ~ 2일 축소함(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3)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토요일 휴무제 시행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 실시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 토요일 휴무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 확대와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
----------	-----

제출년월일 : 2004. 6. 10.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제3조의2 신설)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제16조의2)
 - 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 ~ 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3)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04. 6. 3. ~ 2004. 6. 9.)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파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제3조의2 신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3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3조의2(비밀업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의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3월 이상 6월 미만</td> <td>4</td> </tr> <tr> <td>6월 이상 1년 미만</td> <td>7</td> </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 <td>10</td> </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 <td>16</td> </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 <td>19</td> </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 <td>22</td> </tr> <tr> <td>6년 이상</td> <td>23</td> </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4	6월 이상 1년 미만	7	1년 이상 2년 미만	10	2년 이상 3년 미만	13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9	5년 이상 6년 미만	22	6년 이상	23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3</td> </tr> <tr> <td>.....</td> <td>6</td> </tr> <tr> <td>.....</td> <td>9</td> </tr> <tr> <td>.....</td> <td>12</td> </tr> <tr> <td>.....</td> <td>14</td> </tr> <tr> <td>.....</td> <td>17</td> </tr> <tr> <td>.....</td> <td>20</td> </tr> <tr> <td>.....</td> <td>21</td> </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	6	9	12	14	17	20	21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4																																				
6월 이상 1년 미만	7																																				
1년 이상 2년 미만	10																																				
2년 이상 3년 미만	13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9																																				
5년 이상 6년 미만	22																																				
6년 이상	23																																				
재직기간	연가일수																																				
.....	3																																				
.....	6																																				
.....	9																																				
.....	12																																				
.....	14																																				
.....	17																																				
.....	20																																				
.....	21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출산</td> <td>.....</td> <td>3</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출산	3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구분	대상	일수																																			
출산	3																																			